

KPMG ACI

2019

# Audit Committee Outlook

감사위원회 현황 및 활동 분석 리포트

“2019년 국내 최초로  
KOSPI 200 기업 감사위원회 현황을  
총망라한 보고서”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Audit Committee Institute

June 2019





## 목 차

CEO 인사말씀	4
Key Takeaways	5
KOSPI 200 Audit Committee	
1. 설치: 감사위원회 vs. 감사	6
2. 감사위원회 구성	7
3. 감사위원회 운영	17
4. 감사(위원) 선임 안건 의결권 행사	27
5. 감사위원회 안건	28
별첨: 조사 대상 KOSPI 200 기업 List	33

## CEO 인사말씀

지난 2018년은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제정을 비롯하여 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新외부감사법') 시행,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의무화, 사업보고서 내 감사위원회 관련 공시정보 확대 등 감사위원회의 역할 및 책임 강화에 있어 매우 의미있는 변화들이 있던 해였습니다.

2018년 5월 제정된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은 현행 법령을 존중하면서도 감사위원회가 향후 나아가야 할 선진적인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예컨대, 감사위원회 전원 사외이사 구성,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2명 이상 포함 등 상법보다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부터 시행된 新외부감사법은 감사위원회에 의한 외부감사인 직접 선임, 외부감사인 후보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를 위한 대면회의 의무화 등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회계부정과 관련하여 신분 제재, 징역, 벌금이 대폭 확대·상향되는 등 회계부정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었습니다.

아울러, 2018년 3월 금융위원회가 공표한 보도자료에 따라 연결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에 대해 2019년부터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 기재된 감사위원회 관련 내용에 대하여 직접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2018년 12월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에 따라 기업들은 사업보고서에 감사위원회 대상 교육,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감사위원회-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서면/대면) 등을 공시해야 합니다.

「KPMG ACI 2019 Audit Committee Outlook」은 이와 같은 법제도 변화를 고려해, 2018 사업연도 국내 주요 기업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을 다방면에서 조사 및 분석하였습니다.

'1. 설치: 감사위원회 vs. 감사'에서는 감사위원회 및 감사 설치에 관한 법적 의무를 간략히 소개하고 KOSPI 200 기업 중 각 감사기구를 설치한 비중을 살펴봅니다. '2. 감사위원회 구성'의 경우 감사위원회 규모, 사외이사 비중, 회계 및 재무 전문가 현황 등을 다룹니다. '3. 감사위원회 운영'에는 감사위원회 회의활동, 지원조직, 교육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으며, '4. 감사(위원) 선임 안건 의결권 행사'에서는 감사(위원) 선임 안건에 대해 주로 어떤 사유로 반대 의결권이 행사되는 지 논의합니다. '5. 감사위원회 안건'의 경우 KOSPI 200 기업 감사위원회가 2018 사업연도에 다룬 감사위원회 안건을 감사위원회 활동영역 별로 분류하여 분석해 보았습니다.

본 보고서는 감사위원회와 감사에 공통·개별 적용 여부를 구분하여 표시함으로써 해당 감사기구의 역할 수행 시 참고가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삼성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udit Committee Institute, 이하 'ACI')가 구축한 국내 기업의 감사기구 및 지배구조 관련 Data Base를 활용하여 ACI의 고유한 분석과 통찰을 담고자 하였습니다.

삼성KPMG ACI는 지난 2015년 4월, 회계업계 최초로 국내 기업 감사위원회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연구기관으로 설립된 이래, 간행물 발간, 감사위원 및 감사 대상 교육 프로그램 및 세미나 개최, 감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자문 서비스 제공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삼성KPMG ACI는 앞으로도 올바른 기업지배구조 확립과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과 지원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6월  
삼성KPMG CEO

김 교태

## Key Takeaways



### 법적 의무를 넘어, 모범기준에 근접한 Practice 확산

- 감사위원회 설치 기업 중 감사위원이 4명 이상인 기업 비중이 20.9%로 나타남 (상법상 의무: 감사위원회는 최소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 감사위원회 모범기준\* 권고사항: 최소 3명 이상의 이사) \* 이하 '모범기준'
- 감사위원회 설치 기업 중 감사위원 전원이 사외이사인 기업 비중이 97.5%에 달함 (상법상 의무: 사외이사 3분의 2 이상, 모범기준 권고사항: 전원 사외이사)



### 감사위원회 안건 중 회계감독 관련 안건의 비중이 가장 주를 이룸에도, 감사위원 중 회계 및 재무 전문가는 부족

- 재무보고, 재무제표 승인,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등 회계감독에 관한 감사위원회 안건은 전체 감사위원회 안건 중 가장 많은 비중(55.7%)을 차지
- 그러나, 감사위원 중 회계 및 재무 전문가 비중은 20.8% 수준에 불과하여, 회계감독의 실효성이 우려됨 (상법상 의무\*\*: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최소 1명, 모범기준 권고사항: 최소 2명) \*\*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가 설치한 엄격 감사위원회 및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상장회사가 상근감사에 갈음하여 설치한 감사위원회에 적용



### 감사(위원회)를 지원하는 조직이 있다고 공시한 기업의 비중은 매우 높았으나, 이 중 전담조직의 비중은 낮음

- KOSPI 200 기업 중 178사(89%)가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을 설치하였다고 공시
- 그러나 '감사위원회 사무국'과 같이 감사(위원회) 지원만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경우는,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으로 공시된 전체 조직 또는 부서 중 4.4%에 불과



### 감사위원의 평균 보수는 약 5,800만원으로, 최근 급격히 증가한 역할 및 책임을 고려해 합리적인 보수 책정이 필요함

- 최근 감사위원의 역할과 책임이 다음과 같이 강화되고 있음
  - 전통적인 재무·외부감사인 감독 뿐 아니라 리스크·대외 커뮤니케이션 감독 등으로 감사위원회 역할의 저변이 확대되고 있음
  - 新외부감사법, 개정 외감규정 시행세칙 등에 따라 분식회계 발생 시 감사위원에 대한 처벌도 매우 강화되었음
- 실제로, 국내 감사위원 보수는 영국 및 미국 대비 매우 낮은 수준임

- 조사 대상: KOSPI 200 기업 (2019.4 기준)
- 기준 시점: 2018 사업연도
- 출처: 사업보고서, 주주총회소집공고 등 각 기업의 공시자료

# 1. 설치: 감사위원회 vs. 감사

감사위원회 & 감사 구분

## 감사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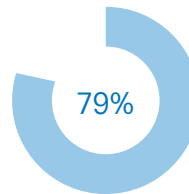
“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은  
 상법이 요구하는  
 기준보다  
 더 작은 규모의  
 회사도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 관련 법규

- 상법 §542-11.1, 동법 시행령 §37.1  
 - 직전연도 말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함
-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1.1.1  
 - 자산총액 1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 설치 권고

### 실태

감사위원회 설치 기업 비중



1. KOSPI 200 중 158사(79.0%)가 감사위원회 설치
2. 상기 158사 중 39사(24.7%)가 자발적 감사위원회 설치 (자산총액 2조원 미만)

## 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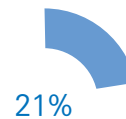
“  
 KOSPI 200 기업  
 5사 중 1사 꼴로  
 상근감사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관련 법규

- 상법 §542-10.1, 동법 시행령 §36.1  
 - 직전연도 말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상장회사는 상근감사를 설치하여야 함
- 감사 모범규준 §1.1.1  
 -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모든 상장회사는 상근감사 설치 권고

### 실태

상근감사 설치 기업 비중



1. KOSPI 200 중 42사(21.0%)가 상근감사 설치
2. 상근감사를 설치한 42사는 모두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 2. 감사위원회 구성

### (1) 감사위원회 규모

감사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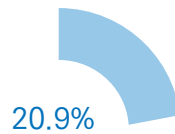
#### 감사위원회

#### 관련 법규

- 상법 §415-2.2, §542-11.4  
-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
-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II.1.1  
-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

#### 실태

감사위원회 설치 기업 중  
감사위원 4명 이상인 기업 비중



평균 감사위원 수 **3.2명**

감사위원회 규모	기업 수	비중
2명 <sup>1)</sup>	1	0.6%
3명	124	78.5%
4명	30	19.0%
5명	3	1.9%
<b>총계</b>	<b>158</b>	<b>100%</b>

1. 감사위원회 설치 기업 10사 중 약 8사는 감사위원의 수가 3명으로 상법상의 최소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전체 평균도 3.2명으로 3명에 근접함
2.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이 4명 이상인 기업이 약 21%로, 법적 의무가 아님에도 (3명을 초과하여) 추가 감사위원을 선임한 KOSPI 200 기업이 상당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  
감사위원회가  
3명으로 구성된  
경우가 대부분이나,  
4명 이상의  
감사위원을  
보유한 기업도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기업 중  
5사 중 1사 꼴로  
나타나,  
법적 의무를 넘어  
(자발적으로)  
감사위원을  
추가 선임한 기업이  
상당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 (주1) 종도퇴임 감사위원으로 일한 일시적 결원, 퇴임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신규 감사위원 선임 예정이라고 공시함

## 2. 감사위원회 구성 (계속)

### (2) 사외이사 비중

감사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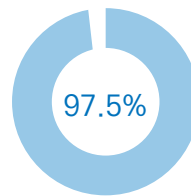
#### 감사위원회

“ 사외이사 비중에 대한 상법상 요구수준이 3분의 2이나, 대부분의 KOSPI 200 기업은 감사위원을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였다. ”

#### 관련 법규

- 상법 §415-2.2, §542-11.4  
-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 이 중 사외이사가 3분의 2 이상
-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II.1.1  
-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 전원 사외이사 권고

#### 실태



1. 감사위원회 설치 기업 158사 중 154사(97.5%)가 감사위원 전원이 사외이사
2. 사외이사 비중이 100% 미만인 기업 4사의 감사위원 중 사외이사 현황  
▪ 3사: 3명 중 2명 (66.7%) / ▪ 1사: 4명 중 3명 (75.0%)

### (3) 재직기간

감사위원회 & 감사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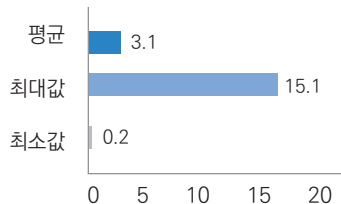
#### 감사위원회

“ 감사위원의 평균 임기는 상법에서 정한 이사의 1회 임기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

#### 관련 법규

- 상법 §383.2  
-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함
- 금융사지배구조법<sup>2)</sup> §6.1.7  
- 사외이사 결격사유: 사외이사 재직기간이 해당 금융회사에서 6년 이상 또는 해당 금융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합산하여 9년 이상
-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II.2.4  
- 감사위원의 임기는 존중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연임 또는 중임 가능

#### 실태<sup>3)</sup>



감사위원 임기 (단위: 년)<sup>4)</sup>

1. KOSPI 200 감사위원의 평균 임기는 상법상 이사의 1회 임기에 근접한 3.1년
2. 조사 대상 감사위원 중 최장 재직기간은 약 15년에 달함<sup>5)</sup>

■ (주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동일 / (주3) 다음 페이지에 계속  
(주4) 2019년 4월 1일 기준 / (주5) 최초에는 감사로서 선임,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 당시 감사위원으로 재선임



## 2. 감사위원회 구성 (계속)

### (3) 재직기간 (계속)

감사위원회 & 감사 구분

#### 감사위원회 (계속)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이 동일 기업에서 6년 이상 재직하는 것은 금융회사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되고 있다. ”

#### 실태 (계속)

임기가 6년 초과인 감사위원 비중<sup>6)</sup>

12.8%

임기	인원 수	비중
1년 이하	17	3.3%
1년 초과 2년 이하	137	27.0%
2년 초과 3년 이하	116	22.8%
3년 초과 6년 이하	173	34.1%
6년 초과 9년 이하	47	9.3%
9년 초과 12년 이하	15	3.0%
12년 초과	3	0.6%
<b>총계</b>	<b>508<sup>7)</sup></b>	<b>100%</b>

1. 대부분의 감사위원의 임기는 1년 초과 6년 이하에 집중되어 있음
2. 임기가 6년 초과인 감사위원은 12.8%로 나타났는데, 금융사지배구조법상 사외이사 임기 상한을 당해회사에서 최대 6년으로 정하고 있어,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금융회사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이 6년을 초과하여 재직하도록 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감사

“ 감사와 비금융회사 감사위원에 대해서는 임기의 상한을 법률로써 정하고 있지 않지만, 장기재직은 독립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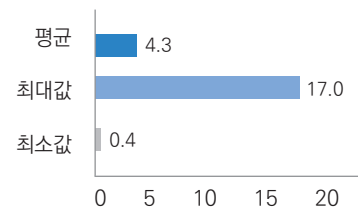
#### 관련 법규

- 상법 §410
  -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함
- 감사 모범규준 §II.1.4
  -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감사의 임기는 존중되는 것이 바람직함

#### 실태

1. KOSPI 200 감사의 평균 임기는 4.3년으로, 감사위원 평균 임기보다 약 1.4배 더 높은 수치
2. KOSPI 200 감사 중 최장 재직기간은 17년에 달하여, 독립성 매우 우려

감사 임기 (단위: 년)<sup>8)</sup>



임기가 6년 초과인 감사 비중<sup>6)</sup>

25.5%

임기	인원 수	비중
1년 이하	2	4.3%
1년 초과 2년 이하	7	14.9%
2년 초과 3년 이하	12	25.5%
3년 초과 6년 이하	14	29.8%
6년 초과 9년 이하	6	12.8%
9년 초과 12년 이하	2	4.3%
12년 초과	4	8.5%
<b>총계</b>	<b>47</b>	<b>100%</b>

1. 임기 6년 초과 감사의 비중은 25.5%로, 감사위원의 경우(12.8%)보다 약 2배 높음
2. 국내 법제도상 감사와 비금융회사 감사위원에 대해서는 임기의 상한을 두고 있지 않음

■ (주6) Rounding Error / (주7) 조사 대상 총 509명이나, 1명은 최초 선임일 미공시 / (주8) 2019년 4월 1일 기준

## 2. 감사위원회 구성 (계속)

### (4) 추천인

감사위원회 & 감사 구분

#### 감사위원회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임할 경우, 사외이사로서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고 감사위원으로서는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 관련 법규

- 상법 §542-8.4, §542-8.1, 동법 시행령 §34.2
  - 직전연도 말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함
- 금융사지배구조법 §17.1
  -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임원(사외이사,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감사위원에 한정) 후보를 추천
-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II.2.3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후보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 권고

#### 실태

1. KOSPI 200 감사위원 후보의 대부분은 이사회가 추천하고 있지만, 사외이사 후보로서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추천 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상<sup>11)</sup>
2. 극히 일부(1.4%)의 감사위원만이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의해 추천됨

추천인	인원 수	비중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7	1.4%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sup>9)</sup>	113	22.2%
이사회	380	74.7%
주주(기관투자자 포함)	0	0.0%
기타 <sup>10)</sup>	3	0.6%
미공시	6	1.2%
<b>총계</b>	<b>509</b>	<b>100%</b>

#### 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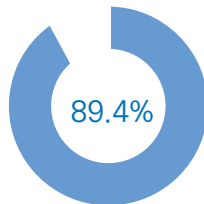
“ KOSPI 200 기업 감사 10명 중 9명은 이사회가 추천하고 있다. ”

#### 관련 법규

- 감사 모범규준 §II.1.3
  - 독립적인 감사후보추천위원회가 주주총회에 감사 후보 추천 권고

#### 실태

이사회가 추천한 감사 비중



추천인	인원 수	비중
감사후보추천위원회	0	0.0%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	4.3%
이사회	42	89.4%
주주(기관투자자 포함)	1	2.1%
기타 <sup>10)</sup>	0	0.0%
미공시	2	4.3%
<b>총계</b>	<b>47</b>	<b>100%</b>

1. KOSPI 200 감사 후보를 이사회가 추천하는 비중은 감사위원의 경우보다 더 높았으며, 감사후보추천위원회에 의한 추천은 全無함

■ (주9)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포함됨  
 (주10) 기타에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같이 법정 설치 위원회와 다른 명칭의 추천위원회가 포함됨  
 (주11) 감사위원 분리 선임이 아닌 경우,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먼저 선임하고 그 다음에 감사위원으로 선임됨

## 2. 감사위원회 구성 (계속)

### (5) 학력 및 전공

#### 감사위원회

#### 관련 법규

- 감사위원의 학력 및 전공에 관한 관련 법규는 없음

#### 실태

##### ▶ 학력

감사위원 중 박사 학위 비중

43.0%

학력	인원 수	비중
중졸 이하	0	0.0%
고졸	1	0.2%
학사	141	27.7%
석사	111	21.8%
박사	219	43.0%
미공시	37	7.3%
<b>총계</b>	<b>509</b>	<b>100%</b>

1. KOSPI 200 감사위원 중 64.8%는 석사 학위 이상 소지
2. 박사의 비중이 높은 것은 사외이사 중 교수가 많은 데 기인

##### ▶ 전공

감사위원 중 상경계 전공 비중

46.4%

전공	인원 수	비중
인문계	145	28.5%
상경계	236	46.4%
이공계	62	12.2%
언론계	1	0.2%
예체능계	1	0.2%
기타 <sup>12)</sup>	9	1.8%
미공시	55	10.8%
<b>총계</b>	<b>509</b>	<b>100%</b>

1. KOSPI 200 감사위원 중 약 절반이 경영·경제 전공
2. 인문계 비중이 상경계 다음으로 높은 것은 법조인 출신 사외이사가 많은 편이고 그들의 전공이 법학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

■ (주12) 기타에는 의학, 간호학, 조경학, 군사학 등이 포함됨

“  
사외이사 중  
교수가 많기  
때문에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중  
박사 학위 소지자의  
비중이 높다.  
”

## 2. 감사위원회 구성 (계속)

### (5) 학력 및 전공 (계속)

감사위원회 & 감사 구분

감사

#### 관련 법규

- 감사의 학력 및 전공에 관한 관련 법규는 없음

#### 실태

##### ▶ 학력

감사 중  
박사 학위 비중

2.1%

학력	인원 수	비중
중졸 이하	0	0.0%
고졸	0	0.0%
학사	18	38.3%
석사	22	46.8%
박사	1	2.1%
미공시	6	12.8%
<b>총계</b>	<b>47</b>	<b>100%</b>

1. 사외이사는 교수 출신이 많아 박사 학위 소지자의 비중이 높은 반면, 상근감사는 감사직이 주된 직업이므로 박사 학위 소지자의 비중이 낮음

##### ▶ 전공

감사 중  
상경계 전공 비중

53.2%

전공	인원 수	비중
인문계	8	17.0%
상경계	25	53.2%
이공계	7	14.9%
언문계	0	0.0%
예체능계	0	0.0%
기타	0	0.0%
미공시	7	14.9%
<b>총계</b>	<b>47</b>	<b>100%</b>

1. KOSPI 200 감사 중 약 절반이 경영·경제 전공
2. 인문계와 이공계의 비중은 서로 유사한 수준

“ 사외이사는 교수 출신이 많아 박사 학위 소지자의 비중이 높은 반면, 상근감사는 감사직이 주된 직업이므로 박사 학위 소지자의 비중이 낮다. ”

## 2. 감사위원회 구성 (계속)

### (6) 경력 및 출신

#### 감사위원회

#### 관련 법규

- 상법 §542-11.2.1, 동법 시행령 §37.2
  - 직전연도 말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함
- 금융사지배구조법 §6.3, 동법 시행령 §8.4
  -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등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어야 함
-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11.1.2
  - 감사위원회에 최소 2명 이상의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포함 권고

#### 실태

경력 및 출신	인원 수	비중
<b>전문가_회계 및 재무</b>	<b>106</b>	<b>20.8%</b>
관료	76	14.9%
학계	140	27.5%
정계	14	2.8%
재계	83	16.3%
전문가_법	78	15.3%
기타	12	2.4%
미공시	0	0.0%
<b>총계</b>	<b>509</b>	<b>100%</b>

감사위원 중  
회계 및 재무 전문가 비중

20.8%

세부 구분 <sup>13)</sup>	인원 수	비중
회계법인 근무(감사경험 보유)	45	42.5%
(회계법인 외) 회계분야 5년 이상	28	26.4%
공인회계사(CPA)	13	12.3%
회계학 석박사	13	12.3%
기타 <sup>14)</sup>	7	6.6%
<b>총계</b>	<b>106</b>	<b>100%</b>

“  
상법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의  
엄격 감사위원회와  
자산 1천억원 이상  
상장회사가  
상근감사에 갈음하여  
설치한 감사위원회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1명 이상 선임의  
의무화하고 있으나,  
임의 감사위원회에도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1. KOSPI 200 기업의 감사위원 509명 중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는 106명(20.8%)에 불과함
2. 비상장회사,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 상장회사 등이 설치한 임의 감사위원회의 경우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선임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덧붙여, 회계 및 재무 경력에 대한 공시 미흡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3. 한편, 법률 분야 전문가의 비중이 15.3%로 다음에 나올 감사 중 법률 전문가 비중(8.5%)보다 높은 편이었는데, 이는 금융사지배구조법이 금융회사의 사외이사에 대해 법률 전문성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이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주13) 복수의 항목에 해당할 경우 상위에 있는 항목으로 간주, 예컨대 '회계법인 근무(감사경험 보유)'와 '공인회계사(CPA)'에 모두 해당할 경우 '회계법인 근무(감사경험 보유)' 선택  
(주14) 기타에는 기업 내 재무부서·CFO 경력, 금융기관 및 감독기관 경력 등이 포함됨



## 2. 감사위원회 구성 (계속)

### (6) 경력 및 출신 (계속)

감사위원회 & 감사 구분

감사

#### 관련 법규

- 감사 모범규준 §11.2.2
  - 감사업무와 관련된 법규, 재무제표 작성원칙, 감사인의 판단 등 감사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할 것을 권고

#### 실태

경력 및 출신	인원 수	비중
전문가_회계 및 재무	9	19.1%
관료	3	6.4%
학계	1	2.1%
정계	0	0.0%
재계	29	61.7%
전문가_법	4	8.5%
기타	1	2.1%
미공시	0	0.0%
<b>총계</b>	<b>47</b>	<b>100%</b>

감사 중  
회계 및 재무 전문가 비중

19.1%

“  
감사에 대해서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성이  
법률로써  
강제되고 있지는  
않다.  
”

세부 구분	인원 수	비중
회계법인 근무(감사경험 보유)	4	44.4%
(회계법인 외)회계분야 5년 이상	4	44.4%
공인회계사(CPA)	0	0.0%
회계학 석박사	0	0.0%
기타	1	11.1%
<b>총계</b>	<b>9</b>	<b>100%</b>

1. 감사에 대해서는 회계 및 재무 전문성에 대한 강제 법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의 회계 및 재무 전문가 비중(20.8%)과 유사한 수준(19.1%)을 보임
2. 그러나 표본의 수가 감사위원(509명) 대비 감사(47명)가 압도적으로 작다는 점을 감안해야 함

## 2. 감사위원회 구성 (계속)

### (7) 연령

감사위원회 & 감사 구분

#### 감사위원회

“ KOSPI 200 기업 감사위원은 40세 이하가 없었으며, 과반수는 60세 초과 70세 이하이다. ”

#### 관련 법규

- 감사위원의 연령에 관한 관련 법규는 없음

#### 실태

60세 초과 70세 이하인  
감사위원 비중

56.2%

감사위원 평균 연령 63.5세

연령	인원 수	비중
40세 이하	0	0.0%
40세 초과 50세 이하	21	4.1%
50세 초과 60세 이하	135	26.5%
60세 초과 70세 이하	286	56.2%
70세 초과 80세 이하	63	12.4%
80세 초과 90세 이하	4	0.8%
<b>총계</b>	<b>509</b>	<b>100%</b>

1. KOSPI 200 기업 감사위원 중 56.2%가 60세 초과 70세 이하로, 정년 퇴임 후 감사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추정

#### 감사

“ KOSPI 200 기업 감사는 70세를 초과하는 고령자의 비중이 감사위원의 경우보다 2배 이상 높은데, 이는 감사가 감사위원보다 장기재직하는 경향이 있는 데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

#### 관련 법규

- 감사의 연령에 관한 관련 법규는 없음

#### 실태

60세 초과 70세 이하인  
감사 비중

40.4%

감사 평균 연령 64.9세

연령	인원 수	비중
40세 이하	0	0.0%
40세 초과 50세 이하	2	4.3%
50세 초과 60세 이하	12	25.5%
60세 초과 70세 이하	19	40.4%
70세 초과 80세 이하	13	27.7%
80세 초과 90세 이하	1	2.1%
<b>총계</b>	<b>47</b>	<b>100%</b>

1. KOSPI 200 기업 감사 중 40.4%가 60세 초과 70세 이하로, 정년 퇴임 후 감사로 선임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추정
2. 70세를 초과하는 감사의 비중은 29.8%로, 70세를 초과하는 감사위원의 비중(13.2%)보다 2배 이상 높았는데, 이는 감사가 감사위원보다 대체로 장기재직하는 경향과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짐

## 2. 감사위원회 구성 (계속)

### (8) 성별

감사위원회 & 감사 구분

#### 감사위원회

“ KOSPI 200 기업 감사위원 중 여성의 비중이 매우 낮는데, 여성 감사위원 후보 탐색을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감사위원회 성별 다양성 제고를 통해 집단사고 방지, 관점의 다각화 등을 유도할 수 있다. ”

#### 관련 법규

- 감사위원회의 성별 다양성에 관한 관련 법규는 없음

#### 실태

여성인 감사위원 수



9명 (1.8%)

1. KOSPI 200 기업에 재직 중인 감사위원 509명 중 여성은 9명에 불과함(9사에 각 1명)

#### 감사

“ KOSPI 200 기업 중 여성 감사를 선임한 회사는 없다. ”

#### 관련 법규

- 감사의 성별에 관한 관련 법규는 없음

#### 실태

여성인 감사 수

0명

1. KOSPI 200 기업에 재직 중인 감사 47명 중 여성은 없음

### 3. 감사위원회 운영

#### (1) 회의활동

#### 감사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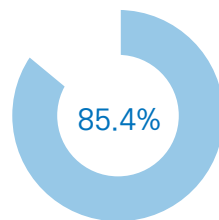
#### 관련 법규

-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III.2.5
  - 분기별로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할 것을 권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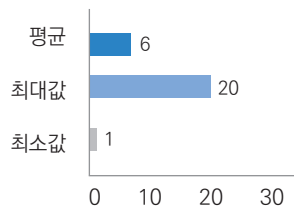
#### 실태<sup>15)</sup>

#### ▶ 회의 횟수

감사위원회 설치 기업 중 회의 횟수 4회 이상 비중



회의 횟수



회의 횟수	기업 수	비중
0회	0	0.0%
1회	4	2.5%
2회	8	5.1%
3회	10	6.3%
4회	18	11.4%
5회 이상 8회 이하	93	58.9%
9회 이상 12회 이하	18	11.4%
13회 이상 16회 이하	5	3.2%
17회 이상 20회 이하	1	0.6%
미공시	1	0.6%
<b>총계</b>	<b>158</b>	<b>100%</b>

“  
대부분의 KOSPI 200 기업 감사위원회는 분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증가하는 감사위원의 역할과 책임 고려 시, 회의활동을 더 강화하여야 한다.”

1. KOSPI 200 감사위원회 중 대부분(85.4%)의 감사위원회가 2018 사업연도 중 4회 이상의 회의 개최
2. 평균 회의 횟수는 6.0회로,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권장 수준인 4회를 상회
3. KOSPI 200 감사위원회 중 13.9%는 회의 개최 횟수가 4회 미만으로, 최소 분기 1회조차 개최하고 있지 않음

■ (주15) 다음 페이지에 계속

### 3. 감사위원회 운영 (계속)

#### (1) 회의활동 (계속)

감사위원회

#### 감사위원회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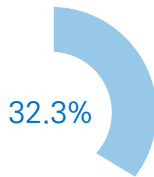
“ KOSPI 200 기업 감사위원회는 평균적으로 연중 14.4건의 안건을 논의하고, 회당 2~3건의 안건을 다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안건이 수정가결되거나 부결되는 경우는 매우 적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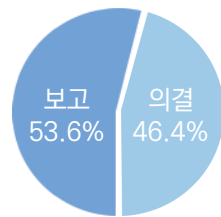
#### 실태 (계속)

##### ▶ 안건 수

6건 이상 10건 이하의 안건을 다룬 기업 비중



보고/의결 안건 비중



평균 안건 수 14.4건

안건 수	기업 수	비중
0건	0	0.0%
1건 이상 5건 이하	25	15.8%
6건 이상 10건 이하	51	32.3%
11건 이상 15건 이하	29	18.4%
16건 이상 20건 이하	15	9.5%
21건 이상 30건 이하	24	15.2%
31건 이상 40건 이하	8	5.1%
41건 이상 50건 이하	3	1.9%
51건 이상 60건 이하	2	1.3%
미공시	1	0.6%
<b>총계</b>	<b>158</b>	<b>100%</b>

1. 6건 이상 10건 이하 구간의 기업이 51사(32.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2. KOSPI 200의 평균 감사위원회 안건 수는 14.4건으로, 회의횟수가 평균 6회를 감안 시 회의 당 2~3건의 안건이 다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3. 보고 안건과 의결 안건의 비중은 각각 53.6%와 46.4%로 비슷한 수치

##### ▶ 수정가결 및 부결



1. 조사 대상 안건 총 2,261건<sup>16)</sup> 중 안건을 원안에서 수정하여 가결한 경우는 5건(0.22%, 4사)
2. 조사 대상 안건 총 2,261건 중 안건이 부결된 경우는 4건(0.18%, 3사)

■ (주16) '5. 감사위원회 안건'에서 세부 분석. '5. 감사위원회 안건'에서 총 2,327건인 이유는, 사업보고서에 공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면 2,261건이나, 복수의 안건이 하나로 묶여있는 경우 조사자의 판단에 따라 개별 안건으로 분리하였기 때문



### 3. 감사위원회 운영 (계속)

#### (2) 비회의활동

#### 감사위원회 & 감사

#### 관련 법규

##### ▶ 교육

- 외부감사법<sup>17)</sup> §8.1, 동법 시행령 §9.2.7.가
  - 감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의 계획에 관하여 내부회계관리규정에 기재해야 함
-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III.5.
  - 감사위원회는 역량을 갖추기 위하여 지속적 교육을 받아야 함
- 감사 모범규준 §III.5.
  - 감사는 역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속적 교육을 받아야 함

##### ▶ 성과평가

- 외부감사법<sup>17)</sup> §8.1, 동법 시행령 §9.2.7.가
  - 감사(위원회) 등에 대한 성과평가,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하여 내부회계관리규정에 기재해야 함
- 금융사지배구조법 §14.1, 동법 시행령 §13.1
  -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에 관하여 지배구조내부규범에 기재해야 함
- 공운법<sup>18)</sup> §8, §11, §28, §33, §36, §52.2
  -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의 감사(위원)에 대한 성과평가 가능
  - 평가결과를 임기 및 보수 산정에 반영해야 함
  - 평가결과를 공시하여야 하며, 국회에 제출해야 함
-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III.3, §VI.2.2
  - 독립성과 활동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수행해야 함
  - 평가결과를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사업보고서에 공시해야 함
- 감사 모범규준 §III.3, §VI.2.2
  - 독립성과 활동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수행해야 함
  - 평가결과를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사업보고서에 공시해야 함

##### ▶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V.2.1
  - 외부감사인과 외부감사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의논하고, 분기에 1회 이상 경영진을 배제한 대면회의를 진행해야 함
- 감사 모범규준 §V.2.1
  - 외부감사인과 외부감사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의논하고, 분기에 1회 이상 경영진을 배제한 대면회의를 진행해야 함

“  
 新외부감사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규정에  
 감사(위원회)에 대한  
 교육 및  
 감사(위원회)  
 성과평가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 (주1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이하 동일 / (주1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동일

### 3. 감사위원회 운영 (계속) (2) 비회의활동 (계속)

감사위원회 & 감사 종합

#### 감사위원회 & 감사 (계속)

“ KOSPI 200 기업 중 과반수가 감사(위원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

#### 실태<sup>19)</sup>

##### ▶ 교육

교육을 실시한 기업 중 교육 1회 실시 기업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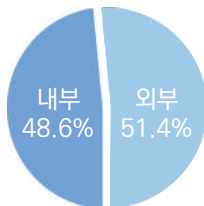
평균교육 횟수 2.5회

교육 횟수	기업 수	비중
1회	58	50.0%
2회	17	14.7%
3회	15	12.9%
4회	10	8.6%
5회	8	6.9%
6회 이상 10회 이하	6	5.2%
11회 이상 15회 이하	1	0.9%
16회 이상 20회 이하	1	0.9%
<b>총계</b>	<b>116</b>	<b>100%</b>

1. KOSPI 200기업 중 116사(58%)가 감사(위원회)에 교육을 실시함(교육 횟수는 총 294회)
2. 평균 교육 횟수는 2.5회이나, 상기 116사 중 절반이 교육을 1회만 실시

“ 감사(위원회) 대상 교육 내용은 주로 新외부감사법, 핵심감사제 등 법제도 변화와 관련된 것이었다. ”

#### 교육 주제 별 구분



#### 교육 내용 별 구분<sup>20)</sup>

교육 내용	교육 횟수	비중
新외부감사법	55	18.7%
新외부감사법 외 법규 <sup>21)</sup>	46	15.6%
핵심감사제 등 재무감독 일반	66	22.4%
감사(위원회) 역할 및 책임 일반 <sup>22)</sup>	26	8.8%
감사(위원회) 운영 사례	10	3.4%
기타 <sup>23)</sup>	82	27.9%
미공시	9	3.1%
<b>총계</b>	<b>294</b>	<b>100%</b>

3. 교육 주체는 내부 주체와 외부 주체가 각각 48.6%와 51.4%로 비슷한 수치
4. 감사(위원회) 대상 교육의 내용은 최근의 법제도 변화와 그에 따른 감사(위원회) 역할 및 책임 강화와 관련된 것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 (주19) 다음 페이지에 계속 / (주20) 교육 횟수 기준 / (주21)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스튜어드십 코드,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등  
(주22) '감사(위원회) 역할 및 책임'에 관한 내용임은 알 수 있으나 구체적 내용을 공시하지 않은 경우  
(주23) 회사의 사업/경영 현황, 국제 금융시장 동향, 반부패/청렴 문화 등

### 3. 감사위원회 운영 (계속)

#### (2) 비회의활동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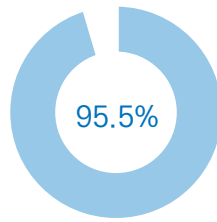
#### 감사위원회 & 감사 (계속)

“  
사업보고서에  
감사(위원회)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했다고 공시한  
회사는  
KOSPI 200 기업 중  
4.5%에 불과하였다.”

#### 실태 (계속)

##### ▶ 성과평가

평가<sup>24)</sup> 여부 미공시 기업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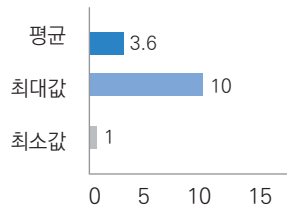


구분	기업 수	비중
미공시	191	95.5%
미실시하였다고 공시	0	0.0%
실시(여부만 공시)	9	4.5%
실시(평가결과까지 공시)	0	0.0%
<b>총계</b>	<b>200</b>	<b>100%</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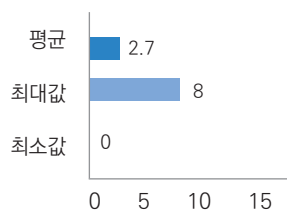
1. KOSPI 200 기업 중 대부분(95.5%)이 감사(위원회) 성과평가 여부를 미공시
2. 성과평가를 실시했다고 공시한 회사도 평가결과의 내용까지는 기재하지 않음

##### ▶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 횟수



대면 커뮤니케이션 횟수



커뮤니케이션 횟수	전체		대면	
	기업 수	비중	기업 수	비중
0회	0	0.0%	35	17.5%
1회	3	1.5%	26	13.0%
2회	64	32.0%	31	15.5%
3회	33	16.5%	30	15.0%
4회	54	27.0%	55	27.5%
5회	26	13.0%	11	5.5%
6회	9	4.5%	4	2.0%
7회	5	2.5%	4	2.0%
8회	3	1.5%	3	1.5%
9회	1	0.5%	0	0.0%
10회	1	0.5%	0	0.0%
미공시	1	0.5%	1	0.5%
<b>총계</b>	<b>200</b>	<b>100%</b>	<b>200</b>	<b>100%</b>

1.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은 평균 3.6회 이루어졌으며, 이 중 대면 커뮤니케이션은 평균 2.7회
2. KOSPI 200 기업 중 감사(위원회)-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을 실시하지 않은 기업은 없었지만 서면으로만 커뮤니케이션 한 경우가 17.5%에 달해, 대면 회의를 통한 교류 활성화가 필요함

■ (주24) 감사위원 개인에 대한 독립성 평가는 대개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수준의 형식적인 평가인 경우가 많아, 동 조사는 활동내역에 대한 성과평가를 대상으로 함

“  
KOSPI 200 기업의  
감사(위원회)-  
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 횟수의  
평균은 3.6회  
나타났고,  
KOSPI 200 외  
기업의 경우 횟수가  
더 적을 것이다.  
모범규준 및  
감독당국에서  
연 4회 이상 요구하고  
있는 바, 기업들의  
개선이 필요하다.”

### 3. 감사위원회 운영 (계속)

#### (3) 지원조직

#### 감사위원회 & 감사

“ KOSPI 200 기업의 대부분이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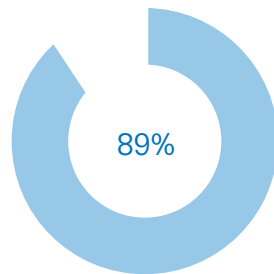
“ 형식적인 지원이 아닌, 실질적으로 실무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부서의 지원이 필요하다. ”

#### 관련 법규

- 금융사지배구조법 §20.2
  -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담당부서를 설치해야 함
- 공운법 §32.6
  - 감사(위원회)의 임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을 지원해야 함
-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1.2
  -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해야 함
- 감사 모범규준 §1.2
  -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해야 함

#### 실태

지원조직 설치 기업 비중



부서 유형 별 구분

부서 유형	부서 수	비중
감사(위원회) 지원 전담 <sup>(25)</sup>	10	4.4%
내부감사	70	30.7%
회계/재무/자금	49	21.5%
내부통제/내부회계	13	5.7%
IR/공시	11	4.8%
준법/윤리	28	12.3%
경영/행정 <sup>(26)</sup>	46	20.2%
기타	1	0.4%
<b>총계</b>	<b>228<sup>(27)</sup></b>	<b>100%</b>

1. KOSPI 200 기업 중 178사(89%)가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설치
2. 상기 178사에서 총 225개의 지원조직을 설치
3. '감사위원회 사무국'과 같이 감사(위원회) 지원을 전담하는 부서는 4.4%에 불과
4.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중 내부감사부서가 30.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sup>(28)</sup>

■ (주25) 예시: 감사위원회 사무국, 감사지원팀 등 / (주26) 예시: 이사회 사무국, 기획팀, 주식관리팀, 총무팀 등  
 (주27) 지원 조직 225개 중 3개 부서가 복수의 유형에 해당하여 총계가 228임  
 (주28) 내부감사부서에 대한 세부 분석은 다음 페이지부터

### 3. 감사위원회 운영 (계속)

#### (4) 내부감사부서

#### 감사위원회 & 감사

#### 관련 법규

##### ▶ 보고라인

-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IV.5.2  
-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부서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감독해야 함
- 감사 모범규준 §IV.5.2  
- 감사는 내부감사부서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감독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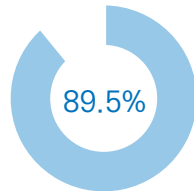
##### ▶ 임면 동의

-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IV.5.1  
-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면에 대한 동의권을 확보하여 독립성을 확보해야 함
- 감사 모범규준 §IV.5.1  
- 감사는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면에 대한 동의권을 확보하여 독립성을 확보해야 함

“  
고위 경영진의 부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 보고라인을 확보해야 한다.  
”

#### 실태<sup>29)</sup>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한 기업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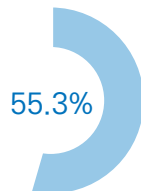


구분	기업 수	비중
예	179	89.5%
아니오	8	4.0%
미공시	13	6.5%
<b>총계</b>	<b>200</b>	<b>100%</b>

1. KOSPI 200 기업 중 179사(89.5%)가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하였다고 공시

##### ▶ 보고라인

보고라인이 경영진인 기업 비중



보고라인	기업 수	비중
감사(위원회)	48	26.8%
이사회	17	9.5%
경영진	99	55.3%
미공시	15	8.4%
<b>총계</b>	<b>179</b>	<b>100%</b>

2. 내부감사부서 설치 기업 179사 중 과반수(99사, 55.3%)가 보고라인을 경영진으로 설정

■ (주29) 다음 페이지에 계속



### 3. 감사위원회 운영 (계속)

#### (4) 내부감사부서 (계속)

감사위원회 & 감사 종합

#### 감사위원회 & 감사 (계속)

“  
내부감사부서  
구성원의  
신분이 보장되어야  
독립적인 감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

#### 실태 (계속)

##### ▶ 임면 동의

감사(위원회)가  
임면 동의권을 확보한 기업 비중

41.3%

구분	기업 수	비중
감사(위원회)의 동의 또는 협의	74	41.3%
구성원 신분 보장만 명시 <sup>30)</sup>	54	30.2%
기타	1	0.6%
미공시	50	27.9%
<b>총계</b>	<b>179</b>	<b>100%</b>

1.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한 KOSPI 200 기업 중 41.3%가 내부감사부서 구성원 임면 시 감사(위원회)의 동의 또는 협의 명문화
2.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한 KOSPI 200 기업 중 30.2%는 내부감사부서 구성원의 신분 보장을 명문화

■ (주30) '법령 위반 또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분상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등의 규정을 명문화 하였으나, 감사(위원회)의 동의나 협의는 요구하지 않는 경우

### 3. 감사위원회 운영 (계속)

#### (5) 보수

#### 감사위원회

“ 감사위원의 보수는 업무에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 부담하는 법적 책임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

#### 관련 법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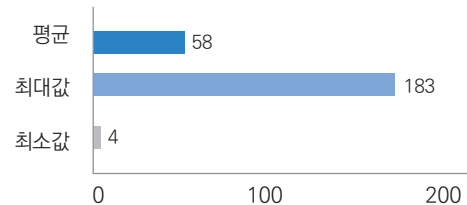
- 상법 §388
  - 이사의 보수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함
-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III.4
  - 감사위원의 보수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위임된 이사보수 한도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결정할 수 있음
  - 이사로서 수행하는 업무에 추가하여 감사위원회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고려되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함

#### 실태

#### 감사위원 보수 평균

5,800만 원

감사위원 보수<sup>31)</sup>  
(단위: 백만 원)



보수	기업 수	비중
0	0	0.0%
0원 초과 25백만 원 이하	13	8.3%
25백만 원 초과 50백만 원 이하	41	26.1%
50백만 원 초과 75백만 원 이하	73	46.5%
75백만 원 초과 100백만 원 이하	25	15.9%
100백만 원 초과 150백만 원 이하	4	2.5%
150백만 원 초과 200백만 원 이하	1	0.6%
<b>총계</b>	<b>157<sup>32)</sup></b>	<b>100%</b>

1. KOSPI 200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기업의 감사위원 개인별 보수는 평균 5,800만 원 수준
2. 5,000만~7,500만 원 구간이 46.5%로 가장 높은 비중
3. 감사위원 개인별 보수 평균이 1억 8,300만 원인 회사가 있었으나 이는 장기재직형 기타비상무이사가 포함된 데 기인함

■ (주31) 각 회사별 감사위원 개인별 보수 평균 기준

(주32) 중도퇴임한 감사위원 2인과 재직 중인 감사위원 3인의 평균을 통합하여 계산한 1사 제외

### 3. 감사위원회 운영 (계속)

#### (5) 보수 (계속)

#### 감사

#### 관련 법규

- 상법 §388, §415, §542-12.5
  - 감사의 보수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함
  - 감사의 선임 또는 보수 결정을 위한 안건은 이사의 선임 또는 보수 결정을 위한 안건과 별도로 상정해야 함
- 감사 모범규준 §III.4
  - 감사의 보수는 상근여부, 감사 업무에 투입하는 노력 및 시간, 부담하는 법률적 책임 수준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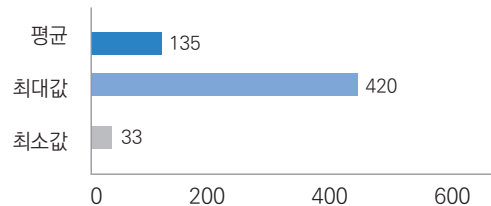
#### 실태

“  
 감사위원은  
 절대적 다수가  
 회사에 상근하지 않는  
 사외이사인 반면,  
 조사 대상인  
 KOSPI 200 기업의  
 감사는 모두  
 상근임에 따라,  
 감사위원 보수 대비  
 감사의 보수가  
 훨씬 높다.  
 ”

감사 보수 평균

1억 3,500만 원

감사 보수<sup>33)</sup>  
 (단위: 백만 원)



보수	기업 수	비중
0	0	0.0%
0원 초과 50백만 원 이하	7	16.7%
50백만 원 초과 100백만 원 이하	13	31.0%
100백만 원 초과 200백만 원 이하	16	38.1%
200백만 원 초과 300백만 원 이하	1	2.4%
300백만 원 초과 400백만 원 이하	4	9.5%
400백만 원 초과 500백만 원 이하	1	2.4%
<b>총계</b>	<b>42</b>	<b>100%</b>

1. KOSPI 200 중 감사를 설치한 기업의 감사 보수는 평균 1억 3천 5백만 원 수준
2. 1억~2억 원 구간이 38.1%로 가장 높은 비중

■ (주33) 각 회사별 감사 개인별 보수 평균 기준

## 감사위원회 & 감사

“ 국민연금기금은 감사위원 및 감사 선임 안건에 대하여 독립성 및 충실성 미흡, 주주권익 침해 이력 등을 고려해 반대표를 행사한다. ”

“ KOSPI 200 기업 감사위원 및 감사는 주주권익 침해 이력으로 인한 반대 비중이 높았다. ”

### 개요

-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에 따라 피투자회사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음
- 2018 사업연도에 대한 2019 정기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기금은 감사위원 및 감사 선임 안건 총 474건 중 105건(22.2%)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
  - 상기 105건 중 KOSPI 200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46건

### 실태

#### ▶ 국민연금기금이 반대한 감사(위원) 선임 안건 105건

거래관계 및 이해관계로 인한 반대 비중



장기재직으로 인한 반대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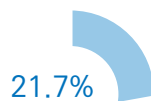


반대 사유	안건 수	비중
독립성: 계열회사 및 당해회사	16	15.2%
독립성: 거래관계 및 이해관계	21	20.0%
독립성: 장기재직	21	20.0%
독립성: 법률상 결격사유	7	6.7%
충실성: 참석률 미달	7	6.7%
주주권익 침해 이력	13	12.4%
기타 <sup>34)</sup>	20	19.0%
<b>총계</b>	<b>105</b>	<b>100%</b>

1. 감사위원 및 감사 선임에 대한 반대 사유로는 거래관계 및 이해관계로 인한 독립성 훼손과 장기재직으로 인한 독립성 훼손의 비중이 가장 높았음

#### ▶ 상기 105건 중 KOSPI 200 기업에 해당하는 46건

주주권익 침해 이력으로 인한 반대 비중



반대 사유	안건 수	비중
독립성: 계열회사 및 당해회사	4	8.7%
독립성: 거래관계 및 이해관계	9	19.6%
독립성: 장기재직	7	15.2%
독립성: 법률상 결격사유	0	0.0%
충실성: 참석률 미달	2	4.3%
주주권익 침해 이력	10	21.7%
기타 <sup>34)</sup>	14	30.4%
<b>총계</b>	<b>46</b>	<b>100%</b>

2. KOSPI 200 기업의 경우, 기타를 제외하면 주주권익 침해 이력으로 인한 반대의 비중이 가장 높았음

■ (주34) 기타에는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 승인결과 미확인, 사전검토에 필요한 정보의 부족, 의결권 행사 제한을 피하기 위한 감사위원회 도입 등이 포함됨

## 5. 감사위원회 안건

감사위원회

### 감사위원회

“  
 감사위원회 활동의 대부분이 회의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사위원회 회의에 상정된 안건 분석을 통하여 감사위원회 역할 수행의 실질을 탐구해 볼 수 있다.”

“  
 대분류를 기준으로 재무감독과 관련된 안건이 25.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 개요

-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다루어진 안건을 살펴보는 것은 감사위원회 역할 수행의 실질을 가능해볼 수 있는 효과적 척도임
  - 최근 감사위원회의 비회의활동이 강조되고 있으나, 회의활동을 통한 역할 수행이 여전히 주를 이루고 있음
- KOSPI 200 기업 중 2018년 말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158사가 2018 사업연도 동안 다룬 감사위원회 안건 2,327건<sup>(35)</sup>을 활동영역 별로 분류함

### 실태<sup>(36)</sup>

대분류	세분류	건수	비율
<b>재무감독</b>		<b>597</b>	<b>25.7%</b>
	재무보고	341	14.7%
	재무제표 승인	84	3.6%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	86	3.7%
	재무감독 일반	64	2.8%
	재무구조	16	0.7%
	재무제표 이사회 승인에 대한 감사위원 전원 동의	6	0.3%
<b>외부감사인 감독</b>		<b>393</b>	<b>16.9%</b>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수령	27	1.2%
	외부감사인의 보고	92	4.0%
	외부감사인 선임·해임	139	6.0%
	외부감사인 비감사용역 검토·승인·보고	35	1.5%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47	2.0%
	핵심감사항목 선정	40	1.7%
	외부감사인 평가	5	0.2%
	외부감사 감독 일반	8	0.3%
<b>부정 대응</b>		<b>1</b>	<b>0.0%</b>
	내부신고제도 감독	1	0.0%
<b>내부통제·내부감시장치 감독</b>		<b>117</b>	<b>5.0%</b>
	내부통제 보고	40	1.7%
	내부통제 평가	15	0.6%
	내부감시장치 평가	49	2.1%
	내부통제기준 제·개정	13	0.6%
	준법감시인/준법지원인의 보고	0	0.0%
	준법감시인/준법지원인 임면	0	0.0%
<b>리스크 관리</b>		<b>41</b>	<b>1.8%</b>
	리스크 관리	41	1.8%

■ (주35) 사업보고서에 공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면 2,261건이나, 복수의 안건이 하나로 묶여있는 경우 조사자의 판단에 따라 개별 안건으로 분리

(주36) 다음 페이지에 계속

## 5. 감사위원회 안건 (계속)

감사위원회

### 감사위원회 (계속)

“  
감사위원회는 대부분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기에, 내부감사부서의 상시 지원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관련 안건의 비중이 높았다.

“  
재무감독, 외부감사인 감독 등 감사위원회의 전통적 역할을 제외한 나머지 역할과 관련된 안건의 비중은 낮은 편이다.

### 실태 (계속)<sup>37)</sup>

대분류	세분류	건수	비율
<b>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b>		<b>307</b>	<b>13.2%</b>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수령	89	3.8%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88	3.8%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39	1.7%
	내부회계관리규정 제·개정	47	2.0%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일반	44	1.9%
<b>내부감사 감독</b>		<b>422</b>	<b>18.1%</b>
	내부감사 결과 보고	207	8.9%
	내부감사 계획 수립	92	4.0%
	내부감사 집행	26	1.1%
	내부감사부서 임면·평가	24	1.0%
	내부감사부서의 보고	73	3.1%
<b>자회사 감독</b>		<b>37</b>	<b>1.6%</b>
	자회사 감독	30	1.3%
	자회사 감사위원회 감독	7	0.3%
<b>대외 커뮤니케이션 감독</b>		<b>92</b>	<b>4.0%</b>
	주주총회 안건 검토	58	2.5%
	공시 점검	14	0.6%
	주주총회 소집 결의	19	0.8%
	주주총회 의장 선임	1	0.0%
<b>경영일반</b>		<b>85</b>	<b>3.7%</b>
	경영전략	31	1.3%
	계열회사·최대주주 등과의 거래	41	1.8%
	(외부감사인 외) 외부용역 검토	13	0.6%
<b>이사회 감독</b>		<b>27</b>	<b>1.2%</b>
	감사위원 외 임원 선임·해임·변경	18	0.8%
	임원 보수	9	0.4%
<b>감사위원회 운영</b>		<b>131</b>	<b>5.6%</b>
	감사위원장 선임	75	3.2%
	감사위원회 규정 제·개정	35	1.5%
	감사위원 간 역할 정립	4	0.2%
	감사위원 후보 추천	3	0.1%
	감사위원(회) 교육	2	0.1%
	감사위원회 운영계획 수립	3	0.1%
	감사위원(회) 평가	4	0.2%
	감사위원회 활동 보고	5	0.2%
<b>기타</b>		<b>77</b>	<b>3.3%</b>
	감독당국·법제도 대응	36	1.5%
	기타 보고 수령	25	1.1%
	기타 사유 제·개정	16	0.7%
<b>합계</b>		<b>2,327</b>	<b>100%</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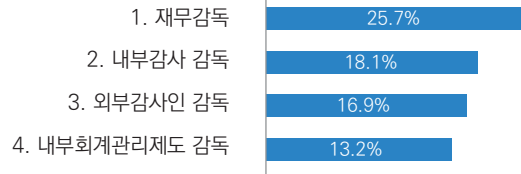
■ (주37) 다음 페이지에 계속

## 5. 감사위원회 안건 (계속)

### 감사위원회 (계속)

#### 실태 (계속)

##### ▶ 감사위원회 안건 TOP4



- 1,3,4위는 상법, 외부감사법 등의 법률에서 강제하는 전통적 회계감독 역할(전체 안건의 55.7%)
- 내부감사 감독(2위)은 법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적 성격
- 리스크 감독 등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영역의 안건 개발 필요

##### ▶ 법제도 변화 관련 안건

- 2018 사업연도 중 KOSPI 200 감사위원회는 新외부감사법, 핵심감사제,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등의 법제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안건을 상당 수 다룸
  - 외부감사인 선정 기준 구비, 대면회의 등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선행 업무(39건, '외부감사인 선임·해임' 內 포함)
  - 외부감사인 보수, 시간, 인력 결정(10건, '외부감사인 선임·해임' 內 포함)
  - 新외부감사법 반영을 위한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47건)
  - 외부감사인의 감사 대비 내부회계관리제도 재구축(20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일반' 內 포함)
  - 핵심감사항목 선정(40건)
  - 감독당국·법제도 대응(36건)

##### ▶ 감사위원회 안건 모범사례

- 법률에 따라 강제되는 안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추세에 맞추어 선제적으로 상정한 KOSPI 200 감사위원회 안건 모범사례는 아래와 같음

영역	기업명	감사위원회 안건명	세분류
사이버 리스크	KT&G	정보보호 개선과제 진행경과	리스크 관리
	현대해상	정보유출 위험방지를 위한 기술도입, 운용현황	
내부신고제도	대우조선해양	내부회계 제보채널 구축 및 운영 방안 보고	내부신고제도 감독
부패방지	한미약품	2018년 ISO 37001 경영검토 및 사후심사 결과 보고	리스크 관리
	한국전력공사	부패방지 방침 수립(안)	기타 사규 제·개정
신규 회계기준	BNK 금융지주	국제회계기준(IFRS) 시행에 따른 그룹 주요 재무 영향	재무감독 일반
	삼성증권	IFRS 16 도입자문 결과 보고	

“ 리스크 감독, 신규 회계기준 도입 검토 등은 법률에 따라 강제되는 의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들은 이러한 주제를 감사위원회 안건으로 다루고 있어, 모범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

## 5. 감사위원회 안건 (계속)

### [부록] 안건 분류에 대한 설명

세분류	설명
<b>재무감독</b>	
재무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관련 보고 수령</li> <li>경영진으로부터 경영실적 또는 전망 등에 관한 보고 수령</li> </ul>
재무제표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무제표에 대한 확인, 검토, 승인<sup>38)</sup> 등</li> </ul>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를 검토 및 승인, 이사회에 제출 등</li> </ul>
재무감독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회계원칙 변경 논의, IFRS 등 신규국제회계기준 도입 검토 등</li> </ul>
재무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상증자, 사채 발행, 자기주식 처분, 배당 등과 관련된 활동</li> </ul>
재무제표 이사회 승인에 대한 감사위원 전원 동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사회가 정기주주총회 대신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것에 동의</li> </ul>
<b>외부감사인 감독</b>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수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수령(연간 감사결과 수령도 포함)</li> </ul>
외부감사인의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부감사인으로부터 상기 감사보고서 수령 외의 보고 수령</li> </ul>
외부감사인 선임·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부감사인 선임 및 해임에 대한 결정(평가 기준 수립 등 포함)</li> <li>외부감사인의 보수, 시간, 인원에 대한 사항 결정</li> </ul>
외부감사인 비감사용역 검토·승인·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부감사인의 비감사용역 수행에 대한 검토, 승인, 보고수령 등</li> </ul>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부감사인과 외부감사 계획, 감사 상 이슈 등에 대하여 논의</li> </ul>
핵심감사항목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핵심감사항목 관련 논의</li> </ul>
외부감사인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사후적 평가</li> </ul>
외부감사 감독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부감사 관련 사안임은 명백하나 구체적인 내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li> </ul>
<b>부정 대응</b>	
내부신고제도 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부신고제도 구비, 보고 라인 확보,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논의</li> </ul>
<b>내부통제·내부감시장치 감독</b>	
내부통제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부통제 시스템의 적정성, 내부통제 상 이슈 등에 대한 보고 수령</li> </ul>
내부통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부통제시스템의 효과성·적절성 평가</li> </ul>
내부감시장치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부감시장치 가동 현황의 효과성·적절성 평가</li> </ul>
내부통제기준 제·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부통제기준, 윤리규범 등 내부통제 관련 규정의 제·개정에 대한 논의</li> </ul>
준법감사인/준법지원인의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준법감사인, 준법지원인으로부터의 보고 수령</li> </ul>
준법감사인/준법지원인 임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준법감사인, 준법지원인의 임면에 관하여 논의</li> </ul>
<b>리스크 관리</b>	
리스크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송, 사이버리스크 등 리스크 관리 관련 사안에 대한 논의</li> </ul>
<b>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b>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수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표자 또는 내부회계관리자로부터 운영실태 보고 수령(대면보고)</li> </ul>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대면회의)</li> </ul>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사회에 운영실태 평가 보고서 제출(대면보고)</li> </ul>
내부회계관리규정 제·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부회계관리규정 제·개정에 대한 논의, 승인 등</li> </ul>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현황, 운영 계획, 내부회계관리자 임면, 고도화 프로젝트 등에 대한 논의</li> </ul>

■ (주38) 법적으로 감사위원회에 '재무제표 승인'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으나, 보고 과정에서 승인이라는 용어를 실무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 5. 감사위원회 안건 (계속)

## [부록] 안건 분류에 대한 설명 (계속)

세분류	설명
<b>내부감사 감독</b>	
내부감사 결과 보고	▪ 내부감사조직 또는 이에 준하는 조직이 감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
내부감사 계획 수립	▪ 내부감사조직과 논의하여 내부감사 계획 수립
내부감사 집행	▪ 내부감사 실무에 직접 관여(징계 수위 결정 등)
내부감사부서 임면·평가	▪ 내부감사조직의 장(CAE) 등 구성원의 인면 관련 논의 및 결정 ▪ 내부감사조직 업무 수행에 대한 성과평가
내부감사부서의 보고	▪ 내부감사조직으로부터 내부감사결과 외의 사항에 대한 보고 수령
<b>자회사 감독</b>	
자회사 감독	▪ 자회사 및 기타 계열회사의 재무, 감사, 내부통제 관련 논의, 결정 등
자회사 감사위원회 감독	▪ 자회사 감사(위원회)에 대한 평가, 관련 보고 수령 등
<b>대외 커뮤니케이션 감독</b>	
주주총회 안건 검토	▪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 적법성 검토 및 진술
공시 점검	▪ 공시 이행 현황 검토, 공시정책 수립 등
주주총회 소집 결의	▪ 주주총회 소집, 개최 일자, 개최 장소 등에 대하여 논의 또는 결정
주주총회 의장 선임	▪ 주주총회 의장 선임
<b>경영일반</b>	
경영전략	▪ 투자, 공장 신설, 제품 특허 취득 등 경영 전략과 관련하여 논의
계열회사·최대주주 등과의 거래	▪ 계열회사와의 거래, 최대주주에 대한 자금 대여 등에 관한 논의
(외부감사인 외) 외부용역 검토	▪ 신사업 전략 수립 등 외부용역에 대한 논의
<b>이사회 감독</b>	
감사위원 외 임원 선임·해임·변경	▪ 대표이사, 사내이사, 타위원회 위원 등의 인사에 관한 논의
임원 보수	▪ 임원의 보수한도나 보수금액, 주식매수권에 대한 논의
<b>감사위원회 운영</b>	
감사위원장 선임	▪ 감사위원회를 대표할 자 선정
감사위원회 규정 제·개정	▪ 감사위원회 규정 및 관련 세부 지침 제·개정
감사위원 간 역할 정립	▪ 감사위원 간 직무대행 등에 대한 논의 및 결정
감사위원 후보 추천	▪ 감사위원 후보 추천
감사위원(회) 교육	▪ 감사위원(회)의 교육에 대한 논의 및 결정
감사위원회 운영계획 수립	▪ 감사위원회 연간 일정 수립, 안건 개발 등
감사위원(회) 평가	▪ 감사위원(회)에 대한 성과 평가 계획 수립, 집행, 평가 결과 활용 등
감사위원회 활동 보고	▪ 감사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자체 보고
<b>기타</b>	
감독당국·법제도 대응	▪ 외부 감독 기관의 감사·감독에 대한 대응, 그 결과에 대한 보고 수령 ▪ 법제도 변경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이행 결과 등
기타 보고 수령	▪ 기타 보고 수령
기타 사규 제·개정	▪ 감사위원회 규정, 내부회계관리규정, 외부감사인 선임규정, 내부통제기준 외 기타 사규의 제정·개정·폐지 관련 논의

# 별첨: 조사 대상 KOSPI 200 기업 List (2019.4) \*

\*기업명 기준 오름차순 정렬

기업코드	기업명	기업코드	기업명	기업코드	기업명
006840	AK홀딩스	010950	S-Oil	014820	동원시스템즈
027410	BGF	034120	SBS	000150	두산
282330	BGF리테일	034730	SK	241560	두산밥캣
138930	BNK금융지주	011790	SKC	042670	두산인프라코어
001040	CJ	001740	SK네트웍스	034020	두산중공업
079160	CJ CGV	006120	SK디스커버리	115390	락앤락
000120	CJ대한통운	096770	SK이노베이션	023530	롯데쇼핑
097950	CJ제일제당	285130	SK케미칼	004000	롯데정밀화학
005830	DB손해보험	017670	SK텔레콤	004990	롯데지주
000990	DB하이텍	000660	SK하이닉스	005300	롯데칠성
114090	GKL	005610	SPC삼립	011170	롯데케미칼
078930	GS	035250	강원랜드	002270	롯데푸드
006360	GS건설	010130	고려아연	071840	롯데하이마트
007070	GS리테일	002240	고려제강	204320	만도
012630	HDC	011780	금호석유	008560	메리츠종금증권
294870	HDC현대산업개발	073240	금호타이어	033920	무학
001060	JW중외제약	000270	기아차	006800	미래에셋대우
096760	JW홀딩스	024110	기업은행	003850	보령제약
105560	KB금융	003920	남양유업	003000	부광약품
002380	KCC	025860	남해화학	005180	빙그레
030200	KT	002350	넥센타이어	006400	삼성SDI
033780	KT&G	251270	넷마블	028260	삼성물산
093050	LF	006280	녹십자	207940	삼성바이오로직스
003550	LG	005250	녹십자홀딩스	032830	삼성생명
034220	LG디스플레이	004370	농심	018260	삼성에스디에스
001120	LG상사	019680	대교	028050	삼성엔지니어링
051900	LG생활건강	008060	대덕전자	009150	삼성전기
032640	LG유플러스	000210	대림산업	005930	삼성전자
011070	LG이노텍	001680	대상	010140	삼성중공업
066570	LG전자	047040	대우건설	016360	삼성증권
108670	LG하우시스	042660	대우조선해양	029780	삼성카드
051910	LG화학	069620	대웅제약	000810	삼성화재
079550	LIG넥스원	006650	대한유화	145990	삼양사
006260	LS	003490	대한항공	000070	삼양홀딩스
010120	LS산전	001230	동국제강	004490	세방전지
035420	NAVER	026960	동서	001430	세아베스틸
005940	NH투자증권	000640	동아쏘시오홀딩스	068270	셀트리온
010060	OCI	170900	동아에스티	004170	신세계
005490	POSCO	001520	동양	055550	신한지주
064960	S&T모티브	049770	동원F&B	003410	쌍용양회

## 별첨: 조사 대상 KOSPI 200 기업 List (2019.4) (계속)

기업코드	기업명	기업코드	기업명
003620	쌍용차	161390	한국타이어
002790	아모레G	000240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090430	아모레퍼시픽	047810	한국항공우주
010780	아이에스동서	060980	한라홀딩스
005850	에스엘	008930	한미사이언스
012750	에스원	128940	한미약품
036570	엔씨소프트	009240	한샘
111770	영원무역	020000	한섬
003520	영진약품	105630	한세실업
000670	영풍	014680	한솔케미칼
007310	오뚜기	018880	한온시스템
271560	오리온	009420	한올바이오파마
001800	오리온홀딩스	003300	한일홀딩스
316140	우리금융지주	051600	한전KPS
014830	유니드	052690	한전기술
000100	유한양행	000880	한화
214320	이노션	088350	한화생명
139480	이마트	012450	한화에어로스페이스
007570	일양약품	009830	한화케미칼
020150	일진머티리얼즈	000720	현대건설
030000	제일기획	005440	현대그린푸드
185750	종근당	086280	현대글로벌비스
035720	카카오	064350	현대로템
192820	코스맥스	079430	현대리바트
120110	코오롱인더	012330	현대모비스
021240	코웨이	010620	현대미포조선
192400	쿠쿠홀딩스	069960	현대백화점
003240	태광산업	017800	현대엘리베이터
036580	팜스코	011210	현대위아
028670	팬오션	004020	현대제철
047050	포스코인터내셔널	009540	현대중공업
103140	풍산	267250	현대중공업지주
086790	하나금융지주	005380	현대차
000080	하이트진로	001450	현대해상
036460	한국가스공사	057050	현대홈쇼핑
071050	한국금융지주	008770	호텔신라
025540	한국단지	004800	효성
002960	한국셀섹유	298040	효성중공업
015760	한국전력	093370	후성
161890	한국콜마	069260	휴켄스



## Audit Committee Institute

### ACI

#### 한은섭 감사부문 대표

T. +82 2 2112 0479  
E. eunsuphan@kr.kpmg.com

#### 김유경 ACI 리더, 상무이사

T. +82 2 2112 0639  
E. youkyoungkim@kr.kpmg.com

#### 강환우 수석연구원

T. +82 2 2112 7728  
E. hwanwookang@kr.kpmg.com

#### 이민형 책임연구원

T. +82 2 2112 7854  
E. minhyunglee@kr.kpmg.com

#### 엄수진 책임연구원

T. +82 2 2112 7608  
E. sujineom@kr.kpmg.com

#### 강병규 연구원

T. +82 2 2112 3305  
E. byoungkyoukang@kr.kpmg.com

### ACI Committee

#### 양승열 부대표

Information, Communication & Entertainment I · II 본부  
T. +82 2 2112 0330  
E. seungyeoulyang@kr.kpmg.com

#### 신경철 부대표

Business Development & Markets 본부  
T. +82 2 2112 0788  
E. kshin@kr.kpmg.com

#### 신장훈 부대표

Consumer Markets I · II / IARCS 본부  
T. +82 2 2112 0808  
E. jshin@kr.kpmg.com

#### 변영훈 부대표

Industrial Markets I · II / Infrastructure,  
Government, and Healthcare 본부  
T. +82 2 2112 0506  
E. ybyun@kr.kpmg.com

#### 허세봉 전무이사

Industrial Markets IV 본부  
T. +82 2 2112 0212  
E. sehonghur@kr.kpmg.com

#### 오현창 전무이사

Information, Communication & Entertainment I 본부  
T. +82 2 2112 7478  
E. heonchangoh@kr.kpmg.com

#### 신재준 상무이사

Banking & Finance I 본부  
T. +82 2 2112 0205  
E. jaejunshin@kr.kpmg.com

「2019 Audit Committee Outlook」

주 저자: 엄수진, 강병규 / Research Assistant: 박시은, 정현택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up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19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본 보고서는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어떤 기업이나 개인의 특정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의 내용과 관련하여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